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98 발의연월일: 2021. 12. 20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우원식 · 박영순

이용빈 · 김경협 · 천준호

최종윤 • 윤준병 • 정일영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 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제2항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고 수리(受理)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·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또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관리·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시장·군수·구 청장의 신고 수리(受理) 근거 명확화(안 제58조제2항).
- 나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등 근거 마련(안 제66조, 제73조, 제75조 및 제79조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2항 중 "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"를 "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제6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2항 및 제4항"을 "제2항, 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
- 2.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

경영한 경우

- 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- 4.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,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
- 6.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7.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 · 상태점검을 한 경우
- 제7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는 경우
- 제7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의2.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
- 제79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4의3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 니하고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.

- 제2조(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, 기존 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혅 개 정 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 ① (생 략) 및 관리의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 · 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게 신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 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설>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---.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장 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 ~ ⑧ (생 략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제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① ~ | 제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① ~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⑤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자동 차성능・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 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 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

-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
- 2.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
- 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 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- 4.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, 그 밖의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
- 6.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의 내용 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⑤ 제1항, <u>제2항 및 제4항</u>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(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·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(이하 "단속"이라 한다)을 하게 할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제7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<u>7.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</u>
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
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한 경
Ŷ
 ⑥ 제2항, 제4항 및 제5항
제73조(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
등) ①
1 0 /위체기 기수\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
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
·상태점검을 하는 경우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청문)
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략)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4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5. ~ 19. (생략)
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
장의 폐쇄
7. (현행과 같음)
제79조(벌칙)
<u>.</u>
1. ~ 14의2. (현행과 같음)
14의3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
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
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・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 15 ~ 19 (현행과 같음)